

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5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곽상언 · 김용민
한병도 · 서영석 · 소병훈
이성윤 · 임미애 · 송옥주
임호선 · 이병진 · 강준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,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 · 낙농 · 한우 · 양돈 · 수산양식 등의 분야별 실습장에 매년 평균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음.

이와 관련,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 동안 현장실습 중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.

하지만 실습 과정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에는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

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및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의 자료 작성·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,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, 관련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신설).

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현장실습 안전관리체계 구축) ① 제6조에 따른 현장실습 수업을 실시하는 농장 등의 대표자는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즉시 이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·보고와 자료의 작성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현장실습 안전관리체계 구축) ① 제6조에 따른 현장실습 수업을 실시하는 농장 등의 대표자는 현장실습장에서 산업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즉시 이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·보고와 자료의 작성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u>